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3. 1. 28	규칙 제 815호
개정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1. 27	규칙 제1067호
일부개정	2016. 2. 26	규칙 제1123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 3. 1	규칙 제1149호
일부개정	2018. 2. 27	규칙 제1175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 6. 25	규칙 제1206호(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	2020. 3. 25	규칙 제1227호(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현황 등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치센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징수범위)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기준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동장과 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징수기준과 금액은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4조(수강신청 등) 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 수강을 신청한 자는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수입처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을 정리하되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는 날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로 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처리) ①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강료 수입의 용도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수강료 수입의 지출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게시·공고한다.

제9조(시설사용)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는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동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용료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실비)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급량비 또는 매식비
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제11조(위원 등의 위·해촉) ① 동장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해촉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선정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선정을 위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선정위원회를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위촉대상자를 선정한 날까지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③ 동장은 관내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주민자치위원 선정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 11. 27]

제11조의3(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①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신규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삭제 <2018. 2. 27>

[본조신설 2013. 11. 27]

제12조(위원 등의 신상 공개)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의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 2. 27]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동장이 조례 제24조에 의한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1 까지 생략

④2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결재란 중 “주무”를 “사무장”으로 한다.

④3 및 ④4 생략

부칙 <2013. 11. 27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7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6. 25 규칙 제1206호,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결재란의 “사무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결재란의 “사무장”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20. 3. 25 규칙 제1227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사용료 요율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사 용 료 율(시간당)	비 고
시 설 대 여	문화·여가 공간	10,000원 이하	· 10인 이하는 50%
	정 보 화 공 간	10,000원 이하	· 10인 이하는 50%
	회 의 실	10,000원 이하	· 10인 이하는 50%
	기 타 공 간	10,000원 이하	· 10인 이하는 50%
장 비 대 여	음 향 장 비	5,000원 이하	· 마이크 1개당 5,000원 이하 추가
	기 타 장 비	5,000원 이하	· 1세트 기준

[별표 2] <개정 2017. 3. 1>

주민자치센터수강료 요율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강 료 율(월별)	비 고
문화·여가 강좌	30,000원 이하	
어학강좌	30,000원 이하	
정보화강좌	30,000원 이하	
생활체육 (탁구, 헬스, 스포츠댄스 등)	30,000원 이하	
그 외 강좌	30,000원 이하	
특수, 전문직업강좌 (주당5시간 이상)	강사료(수당)의 일정범위 에서 수강료를 징수한다.	강사료의 50%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대장(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분담사무	분 담 기 간		1 일 근무시간	비 고
				부 터	까 지		

- <작성요령>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1일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6. 25>

주민자치센터운영일지

(제2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팀 장	동 장	결 재

1. 시설이용현황

시 설 명	이용시간	이용인원	비 고
	: ~ :		

2. 프로그램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신청인원	참석인원	강사명	비 고
	: ~ :				

3. 자원봉사활동현황

○ 참여인원

계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자원봉사자	비 고

○ 참여자 명단

구 분	성 명	참여시간	활 동 내 용	비 고
주민자치위원 (고문 포함)		: ~ :		
		: ~ :		
자 원 봉 사 자		: ~ :		
		: ~ :		
		: ~ :		
		: ~ :		

4. 기타(회의개최, 행사 등)

--

[별지 제4호 서식]

수 강 등 록 부(제4조제3항 관련)

연번	신청일자	프 로 그 램		신 청 자		강사명	비 고
		수강기간	프로그램명	주 소	성 명		

주) 프로그램별로 관리, 수강료 유·무료와 관계없이 관리

[별지 제5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제5조제1항 관련)

년도	회 계	부위원장	위원장	협 조	동 장	
발 의					(인)	
수 입 일					(인)	
현금출납부기재					(인)	
수입 대장 기재					(인)	
수 입 금 액	일금 ₩					
수 입 내 역	내 역	납 부 자		금 액		
		주 소	성 명			
	프로그램별	다수인 경우 수납 대장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수 강 료 수 납 대 장(제5조제1항 관련)

연번	프로그램		납 부 자		납부금액	납부일	비 고
	운영기간	프로그램명	주 소	성명			

주) 수강료 납부일자별로 총괄관리하고 일일결산 실시 후 마감결재

[별지 제7호 서식]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제6조 관련)

수강료 반환 신청서						
프로그램명	납부자 성 명	수강료 납부일	납부금액	반 환 신청액	반환신청사유	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						
년도	회 계	부위원장	위원장	협 조	동 장	
발 의					(인)	
반 환 일					(인)	
현금출납부기재					(인)	
수강료수납대장기재					(인)	
일금 원정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지 출 결 의 서(제7조제2항 관련)

년도	회 계	부위원장	위원장	협	동 장
				조	
발 의					(인)
지 출 일					(인)
현금출납부기재					(인)
지출내역부기재					(인)
지 출 금 액	일금 ₩				
지 출 내 역				지급 계좌 번호	은행 및 지점명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상 호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인)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제7조제3항 관련)

연월일	적요	납부자 (채주)	수입액(1)	지출액(2)	잔액(1-2)

주) 현금출납부는 일계, 누계로 정리

[별지 제10호 서식]

200 년도 월 수강료 수입·지출 계산서(제8조제1항 관련)

받 음 : ○○ 동장

수 입				지 출				집행 잔액	비고
프로그램	전 월	금 월	누 계	지출항목	전 월	금 월	누 계		
총계									

○○동 주민자치위원장 인

주) 수입은 프로그램별로 계산, 지출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별로 계산, 집행잔액 총계만 정리, 비고는 이자수입 등 불부합내용 기재, 매월말일 기준 잔액증명서 첨부 간인

[별지 제12호 서식]

주민자치센터시설사용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사 용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시설	주시설		부대시설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 동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제11조제1항 관련) <개정 2008. 6. 16>

제 호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 동 장 인

※ 고문 위촉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
로 개서하여 사용

[별지 제17호 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08. 6. 16>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광명시 ○○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동 장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6. 2. 26>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 위·해촉 대장(제11조제3항 관련)

위촉 번호	구분	위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또 는 사업장소재지	직업	종사 분야	해촉 연월일	해촉 사유	비 고

- <작성요령> 1. 위촉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00-1)
2. 구분 :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업 : 직장명과 직위 기재(예 : ○○산업 대표, ○○물산 이사 등)
4. 종사분야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
민으로 구분 기재
5. 조례 제20조제1항 해당조문 기재(예 :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
조제1항제1호)

[별지 제19호 서식] (제12조 관련) <개정 2008. 6. 16>

○○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신상 공고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 동 장 인

직 위	성 명	연령	성별	직 업	위촉연월일

- <작성요령> 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으로 기재
2. 직업 : 직장명과 직위 기재(예 : ○○산업 대표, ○○물산 이사 등)

[별지 제20호 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4조제1항 관련)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작 성 자	간사 (인)					
회의구분	정례회() 임시회()			회의주재자		
일 시	년 월 일(요일) : ~ :					
장 소		참석인원	위 원	고 문	기 타	
			명중 명	명중 명	명	
부의안건						
회의결과						
토론사항						
기 타						
첨부서류	○ 부의안건 목록 ○ 심의·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 토론 관련 발언록 ○ 참석자 서명부					

<작성요령> 1. 토론사항 :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진흥활동 관련 토의내용 기재
2. 기타 : 건의사항 및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한 특기사항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제14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_____ 년 월 일
 받 음 ○○ 동장 보 냄 ○○동주민자치위원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위원회(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구 분	건 명	결과 또는 내용	비 고
의결(안) 처리			
심의안건 처리			
토 론 내 용			
건의 사항			

개 최 일 시	년 월 일(요일) : ~ :			
개 최 장 소				
참 석 인원	위 원	명중 명	고 문	명중 명

2. 회의결과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3. 11. 27>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

☐ 심사대상자 구분 : ☐ 위원 / ☐ 당연직이 아닌 고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자택	
주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0점)	5년이상		10		사업장일 경우 재직기간
	3년이상 5년 미만		8		
	1년이상 3년 미만		6		
	관외거주 및 1년 미만		4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20점)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		20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15		
	거의 이해하지 못함		10		
3.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 구체성(5점)	구체적으로 설명가능		5		
	추상적으로 설명가능		3		
	계획에 대해 설명못함		1		
4. 시·동정 관심정도(10점)	관심이 아주 많음		10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		5		
	거의 관심이 없음		2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	50시간 이상		10		자원봉사센터 실적 증명서등 제출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7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4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3		
	10시간 미만		2		
6. 최근 5년간 자치교육 수료(15점)	50시간 이상		15		관련 증빙서류 제출
	25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2		
	5시간 이상 - 25시간 미만		9		
	5시간 미만		6		
7.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5점)	2회 이상		5		표창장 사본제출
	1회 이상		3		
	없음		1		
8. 주민자치 관련 활동 경력 (10점)	주민자치 전문성(경력)	유	10		설치조례 제5조(기능) 6가지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제출
		무	4		
9. 인품 및 적극성(15점)	긍정적이고 원만한 인품과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가 ?		15		
총 계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인)
----------	----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8. 2. 27>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8. 2. 27>